

공 시 송 달 공 고

1. 자동차관리법 법규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의 주소지로 행정처분 사전 통보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22.

영 등 포 구 청 장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위반내용 : 공시송달 내역 참조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50조, 제52조, 제81조,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별표2
- 공시송달 내역

자 동 차 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	차명	사용본거지 주소	적발일시	적발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예정된 처분		반송사유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감경시 금액)	
			- 불	임		참	조 -		

- 공고기간 : 2024. 7. 22. ~ 2024. 8. 6.(15일간)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제출(공시송달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후 체납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 때 1개월마다 증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 임시검사(원상복구 포함)를 명령 하오니 기한내(공시송달 공고기간내) 이행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 (02-2670-4287) 끝.